

광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503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정지웅, 박구용

피고, 피항소인 C

변 론 종 결 2021. 12. 2.

판 결 선 고 2022. 2. 10.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가단53243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표를 이 판결의 별지 표로 바꾸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일자의 각 송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일자의 각 송금액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47,887,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887,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변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2항의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중 ‘나. 이 법원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D 사이에 위 급여 상당액의 금전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D이 J 중계특약점을 운영하는 K으로부터 피고 계좌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8. 8.
6.부터 2020. 9. 7.까지 합계 47,887,68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어머니인 D에게 피고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 D이 피고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D은 피고 계좌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이 입금되면 수시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점, ②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이 입금된 2018. 8.경부터 2020. 9.경까지 거의 매달 피고 계좌에서 D 명의의
통신요금 등이 이체되었고, 같은 기간 D이 근무하던 J 중계특약점의 운영자이자 위 송금액을 송금한
K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점, ③ 2019. 4.경부터 2020. 2.경까지의 기간
중에는 피고 계좌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이 송금된 직후 또는 그 무렵 피고 계좌에서 D 명의로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인출되었고, 특히 2019년 10월, 11월, 2020년 1, 2월에는 송금액의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 인출된 점, ④ 나아가 2018. 8.경부터 2020. 9.경까지 피고 계좌에서 D
명의로 인출된 금원이 약 5,8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 및 피고 계좌에 D
명의로 입금된 금원의 합계는 약 5,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⑤ 피고 계좌의 잔액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이 있기 전인 2018. 8. 4. 기준 454,702원이었고 위 송금 종료 후 약 2주 뒤인 2020. 9. 16. 기준 497,945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피고 계좌에 입금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원상회복 대상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은 D에게 모두 반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당심에서 주장하는 선택적 청구)

피고는 D의 채무초과 상태를 잘 알면서도 피고 계좌를 D에게 대여하여 D의 강제집행면탈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거나 그 자체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액 합계 47,887,680원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3항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어머니인 D의 부탁으로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여 주었다’는 사정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D이 피고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등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고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 표를 이 판결의 별지 표로 바꾸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선희, 판사 김평호, 판사 김혜진

별지

목 록

순번	송금일	송금액	송금자명
1	2018. 8. 6.	1,388,000	K
2	2018. 9. 5.	1,782,590	K
3	2018. 10. 5.	2,664,000	K
4	2018. 11. 5.	1,175,000	K
5	2018. 12. 5.	1,340,000	K
6	2019. 1. 4.	1,450,000	K
7	2019. 2. 7.	2,501,000	K
8	2019. 3. 5.	1,459,000	K
9	2019. 4. 5.	2,535,000	K
10	2019. 5. 7.	3,213,000	K
11	2019. 6. 5.	3,148,000	K
12	2019. 7. 5.	2,668,000	K
13	2019. 8. 5.	4,140,000	급여
14	2019. 9. 5.	1,584,000	K
15	2019. 10. 7.	1,776,270	K
16	2019. 11. 5.	1,743,000	K
17	2019. 12. 5.	1,652,000	K
18	2020. 1. 6.	1,811,000	K
19	2020. 2. 5.	1,739,000	K
20	2020. 3. 5.	1,415,000	K
21	2020. 4. 6.	987,000	K
22	2020. 5. 6.	903,000	K
23	2020. 6. 5.	912,000	K
24	2020. 7. 6.	1,202,000	K
25	2020. 8. 5.	1,669,820	K
26	2020. 9. 7.	1,030,000	K
합계		47,887,680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